

ANTI-DUMPING DUTIES

“같은 품목인데 관세는 천차만별” 다시 커지는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리스크

[오피니언: 반덤핑·상계관세 포커스]

미 무역구제 조치의 최근 동향과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관리 (14p)

[이주의 초점]

“미국산 원유, 제3국 경유해도 FTA 인정”
직접운송 특례 5월 26일부터 시행 (4p)

[오피니언: 인도 통관]

“자칫하면 통관보류·물류비 상승”
인도의 비관세장벽 수입요건과 BIS 인증 (20p)

[위클리 뉴스]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구매대행업자도 의무 등록
“5분 만에 위해식품 판별” 수입식품 검사에도 AI 도입
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 도입... 환급 절차 간소화 (9p)

[판례 동향]

냉동 멘보샤의 품목분류에 관한 판례 해설 (27p)



※ AI 생성 이미지

발행인 백형민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취재 김성은 ray1023@kctdi.or.kr

서준식 sjs1216@kctdi.or.kr

마케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6년 6월 1일(통권 제2181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미국산 원유, 제3국 경유해도 FTA 인정”
비관세장벽 없었다

관세행정실무해설

- 24** 질의응답사례
원산지 표시

09 Weekly News

판례동향

- 27** 관세판례해설
냉동 멘보샤의 품목분류에 관한 판례 해설

오피니언

- 14** 반덤핑 상계관계 포커스
이정운 미국 변호사, Crowell & Moring LLP
새로운 관세환경 속 다시 부상한
반덤핑·상계관세 리스크
시선, 인도 통관
윤승현 언스트앤영(Ernst&Young) India 관세사
인도의 비관세장벽 수입요건과 BIS 인증
-

“미국산 원유, 제3국 경유해도 FTA 인정” 비관세장벽 없앴다

직접운송 특례 5월 26일부터 시행 및 호주산 나프타 대체원료 무관세

관세청이 미국·호주·말레이시아 등을 중심으로 비중동산 원유와 석유화학 원료 수입 확대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자유무역협정(FTA) 직접운송 원칙 완화, 품목분류 기준 정비,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개선 등 비관세장벽 전반을 손질하면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5월 26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비중동산 원유 수입선 다변화 지원’ 브리핑에서 ▲미국산 원유 직접운송 특례 신설,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 품목분류 명확화, ▲말레이시아산 원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단축 지원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비중동산 원유 수입선 다변화 지원’ 브리핑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이번 조치는 중동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국내 에너지·석유화학 업계가 겪고 있는 공급망 불안과 수입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캐나다산 원유의 국내 무관세 도입 확대를 위해 원산지 입증 완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캐나다산 원유는 미국산 경질유 등과 블렌딩할 경우 중동산 중질유와 유사한 특성을 확보할 수 있어 국내 정유시설 개조 없이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급망 대체 효과로 주목받았다.

■ 미국산 원유 ‘직접운송 특례’ 신설… 중남미 경유해도 FTA 적용

관세청이 밝힌 이번 대책의 핵심은 미국산 원유에 대한 ‘직접운송 특례’ 신설이다. 기존 FTA 체계에서는 협정국 간 직접운송된 물품에만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했다.

그동안 정유업체들은 FTA 혜택을 받기 위해 전체 운송경로와 경유국 세관이 발급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경유국 세관 서류 확보가 쉽지 않아 특혜관세 적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관세청은 이번 특례를 통해 기존 ‘구비서류 중심’ 심사에서 ‘실질 운송 여부’ 확인 방식으로 판단기준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정유업체들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나 원유 계측 결과보고서와 같은 자료만으로 직접운송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브리핑에서 이종욱 관세청장은 “하나의 유조선에 여러 국가의 원유를 함께 선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체 운송경로가 담긴 선하증권 확보가 쉽지 않아 특혜관세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중동산 원유를 직접 운송해 들어오던 시기에는 문제가 크지 않았지만, 최근 비중동산 원유 도입이 확대되면서 미국산 원유 도입이 늘었고 직접운송 원칙이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이번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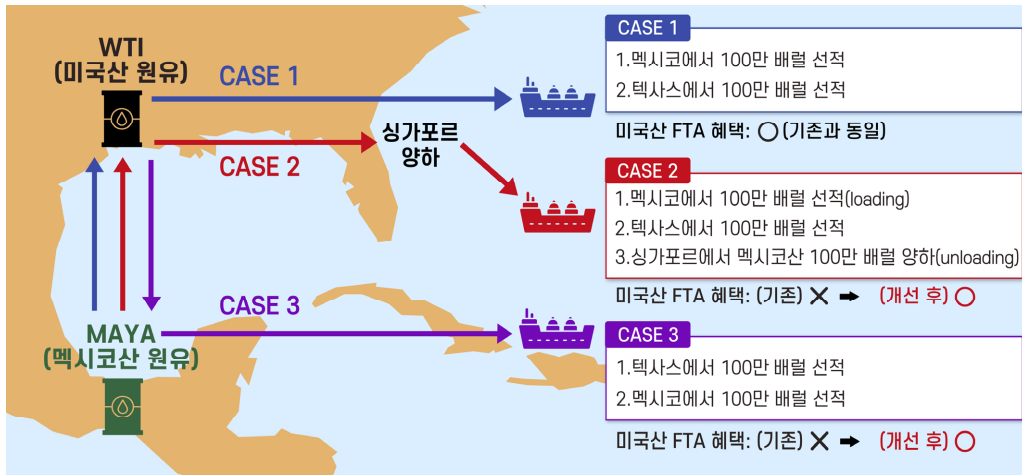
직접운송 특례는 우선 미국산 원유에만 적용된다. 유조선이 이중격벽 구조로 원유를 분리 적재할 수 있어 화재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특례 적용의 근거가 됐다. 관세청은 향후 업계 수요와 운영 대상을 검토해 직접운송 특례 적용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 직접운송 충족 입증 정보 ●

전체 운송경로 입증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정보 - 선박 이동경로 추적 가능 - 해상교통관제를 위한 필수 항법장치
경유국 비가공 입증	유증계획서 - 성질이 다른 원유를 탱크별 분리·보관 - 사전에 엄밀한 탱크 배분계획 수립 계측결과보고서 - 선적·양하 시 탱크별 유량 실측 기록 - 공인검정기관에서 작성

업계는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 한 정유업체는 지난해 미국산 원유 도입 과정에서 직접운송 입증이 어려워 FTA 관세혜택 적용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이번 특례 시행으로 연간 약 1,600만배럴 규모의 미국산 원유 추가 확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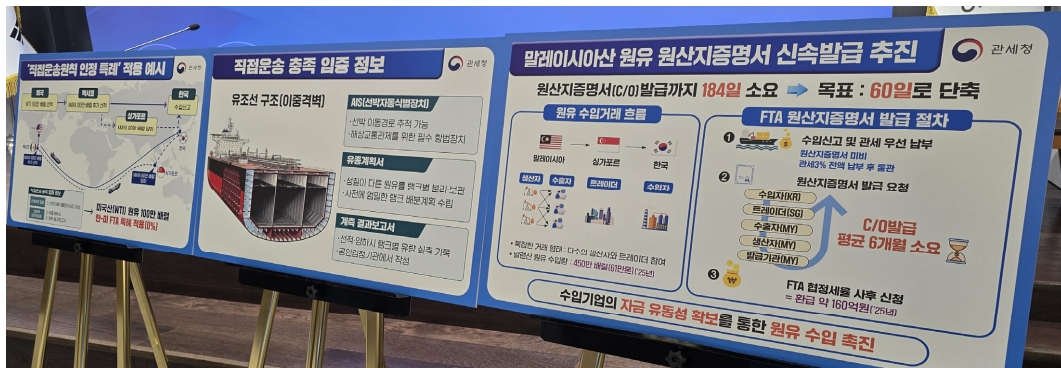
- (CASE 1) 기존에는 H사가 멕시코산 원유(MAYA) 100만 배럴을 선적한 후, 미국산 원유(WTI) 100만 배럴을 선적해 경유지 없이 한국에 도착한 경우에만 미국산 원유에 대한 FTA 특혜 인정
 (CASE 2) 특례를 통해 중간 경유지에서 일부를 양하한 경우에도 미국산 원유에 대한 FTA 특혜 인정
 (CASE 3) 미국에서 먼저 선적하고 멕시코에서 추가 선적한 경우에도 미국산 원유는 FTA 특혜 인정



출처: 관세청

브리핑에 참석한 현대 오일뱅크 관계자는 “직접운송 입증 부담으로 인해 놓치는 원유가 많았는데, 이번 특례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부담이 해소돼 미국산 원유 수입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연간 400만배럴의 원유를 추가 도입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히 미국산 원유 도입 확대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국산 원유 운반선이 멕시코·에콰도르 등 중질유 생산국을 경유해 추가 선적을 하더라도 미국산 물량에 대한 FTA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동 외 지역에서의 중질유 확보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미국산 원유를 적재한 뒤 멕시코와 에콰도르에서 추가 적재한 경우, 멕시코와 에콰도르산 원유는 FTA 특혜 대상이 아니지만 미국산 물량에 대해서는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출처: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세청은 이번 직접운송 특례는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원유 수입구조를 다변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는 중질유를 수입해 정제하는 비중이 높아 멕시코·에콰도르산 등 중질유 확보가 중요한데, 미국산 경질유와 중남미산 중질유를 함께 도입할 수 있는 이번 특례가 공급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직접운송 입증 서류의 경우 업체에서 확보하기 용이하면서도 조작 가능성이 낮은 자료 위주로 선정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전체 항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정보와 탱크별 유종계획서, 계측결과보고서 등은 수입업체가 아닌 운송사나 국가검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자료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미국산 원유에 대한 직접운송 특례는 5월 2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 나프타 대체품 품목분류 명확화… FTA 미체결국서 수입해도 무관세

아울러 관세청은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명확히 했다. 중동산 나프타 수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체원료 수요가 확대됐지만, 품목분류 기준이 불명확해 업계 부담이 지속돼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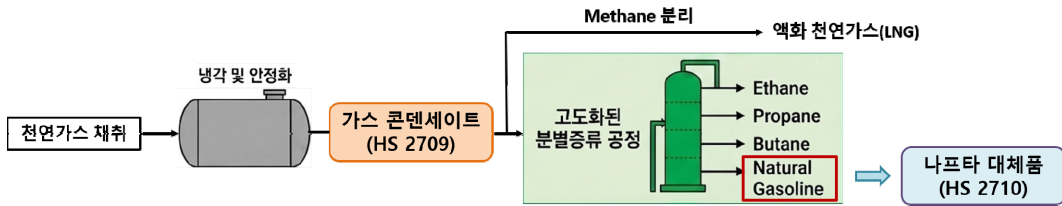
나프타 대체품으로 알려진 천연가스액(NGL)은 그동안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천연가스 채취 이후 고도화된 분별증류(Fractionation) 공정 수행 여부에 따라 HS 제2709호 또는 제2710호로 분류될 수 있다. 제2709호 해설서에서는 “가스 콘덴세이트(gas condensate), 즉 천연가스를 채취한 즉시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원유(crude oil)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원유(HS 제2709호)로 분류돼 왔고 3% 관세와 비축의무가 발생하면서 비축시설을 보유한 업체만 수입이 가능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적용해 해당 품목을 원유가 아닌 석유제품(HS 제2710호)으로 신속 분류했다. 이로써 관세 부담과 비축의무가 동시에 해소돼 수입 즉시 생산공정 투입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결정은 향후 FTA 미체결국으로부터 나프타 대체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관세율을 기존 3%에서 0%로 낮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는 호주산 천연가스액의 품질 경쟁력에도 주목하고 있다. 나프타 함량이 80~90% 수준으로 높아 불순물이 적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약 250만톤 규모의 고품질 대체 원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석유화학업계 전체 나프타 수입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 나프타 대체품의 품목분류 ●



HS 제2709호 가스 콘덴세이트	HS 제2710호 천연가스액(나프타 대체품)
천연가스 원유(Crude Oil)	석유제품
3%(할당 0%, 한·호주 FTA 0%)	0%
비축의무 있음 (비축시설 보유 업체만 수입 가능)	비축의무 없음 (비축시설 없는 석화업체도 수입 가능)

이번 조치는 단순 원가 절감 효과를 넘어 국내 생활밀착형 석유화학 제품 생산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주사기 등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수급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말레이시아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연 개선도 추진

관세청은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기업들의 오랜 애로였던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연 문제 해결에도 나섰다. 현재 말레이시아산 원유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평균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수입업체들이 우선 관세 3%를 전액 납부한 뒤 사후 환급받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부담을 겪어 왔다.

관세청은 말레이시아 당국과 협의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발급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 중이며, 현재 평균 184일 수준인 발급기간을 약 60일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발급기간이 단축될 경우 원유 수입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 기준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약 450만배럴이며, FTA 협정세율 사후 적용에 따른 환급 규모는 약 160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중심으로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신속통관, 납기연장, 담보 생략, 운임 상승분 과세가격 제외 등 지원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전반에 걸친 규제혁신을 지속해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구매대행업자도 의무 등록

관세청이 「관세법」 개정에 맞춰 전자상거래업자 전용 등록 시스템을 6월 5일부터 가동한다. 전자상거래 물품 특별통관 제도를 규정한 「관세법」 제254조 개정사항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8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을 앞두고 사업자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등록 대상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사업자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자체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한국 소비자에게 배송을 지원하는 업체가 포함된다. 국내 사업자는 사이버몰 운영자뿐 아니라 사이버몰에 입점해 전자상거래 물품을 구매대행 또는 판매중개 하는 업자 등이 대상이다. 해외 상품의 배송을 대행하는 국내외 배송대행업자도 등록해야 한다.

특히 기존 「관세법」 제222조 또는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미 관세청에 등록했던 구매대행업자와 전자상거래업자도 신규 등록 시스템을 통해 다시 등록해야 한다.

2026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가이드

신뢰할 수 있는 국경 간 이커머스 생태계, 관세청이 함께 만듭니다.

법령 근거: 관세법 제254조 제2항
주관 목적: 안전한 해외직구 통관체계 구축

등록 시작: 2026년 6월 5일

1 누가 등록해야 할까요? (등록 대상)	2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필요 서류)	3 어떻게 진행되나요? (등록 절차)	4 어디서 신청하나요? (포털 정보)
국내 업체 국내 주소/영업소가 있는 자로 사이버몰 개설·판매·중개자 (네이버, 11번가 등) 해외 업체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자로 사이버몰 개설·판매·중개자 (알라, 태국, 마온 등) 쇼핑몰에 입점한 국내 판매자 국내 주소/영업소가 있는 자로 사이버몰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자 배송대행업체 화주의 위임을 받아 물품 수령 및 국내 배송 대행자 (국내 주소/영업소 없는 자 포함)	✓ 전자상거래업자 등록(경신) 신청서 1부 ✓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부(해당 시) ✓ 인터넷 도메인 등록확인서 1부(사이버몰 운영자에 한함) ✓ 사업자 소재 국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국내 주소/영업소 있는 자에 한함) ✓ 국제 및 관세납세증명서 (국내 주소/영업소 있는 자에 한함)	1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2 심사 서류 검토 및 적합성 심사 3 부호 발급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발급 평균 10일 이내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lecb 국내 사업자: 이메일 인증 (유니패스 회원가입 필요) 해외 사업자: 이메일 인증

자주 묻는 질문(FAQ)

Q 등록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신청 → 심사 → 부호 발급까지
평균 10일 이내 처리됩니다.

Q 등록 비용은 드니요?

A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Q 등록 유효기간은?

A 3년이며, 만료 전
경신이 필요합니다.

Q 이미 통관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A 2026년 6월 5일부터 신규
전자상거래업자부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Q 해외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인증하나요?

A 이메일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등록은 전자상거래업자 전용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ecb/index.do)에서 가능하다. 국내 사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가입한 뒤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통신판 매업신고증, 인터넷 도메인 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관세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는 이메일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 도메인 등록확인서와 현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는 8월 15일 개통 예정인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서 필수로 사용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에도 해당 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관세청은 현재 기업 간 거래(B2B)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통관 체계를 소비자 중심 전자상거래(B2C) 환경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는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전용 포털 및 모바일 앱 개발 등의 기능이 포함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등록제를 통해 해외 직구와 구매대행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업자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위해식품, 위조상품, 불법 의약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에 대한 위험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김성은 기자 |

“5분 만에 위해식품 판별” 수입식품 검사에도 AI 도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입식품의 표시 사항과 위해 성분을 자동 판별하는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 해외 직구 식품 사진만 업로드하면 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도입될 예정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가 AI 기반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27일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의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국민 식탁 안심을 위한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 개발 및 실증’ 과제를 선정했으며, 식약처와 협력해 위해식품 차단과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수입식품 한글 표시 사항 자동 검토 시스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위해 판별 시스템,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 웹앱 등 AI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3종이 공개됐다. ‘수입식품 한글 표시 사항 자동 검토 시스템’은 AI가 제품 사진 속 한글 표시사항을 자동 분석해 표시 기준 적합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검사관이 직접 사진과 신고 내용을 대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AI가 이를 자동 처리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입검사의 정확성과 업무 효율성이 동시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위해 판별 시스템’도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검사관이 제품 판매 사이트에 일일이 접속해 반입 차단 원료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AI가 자동으로 사이트를 분석해 위해 성분 표시 여부를 판별한다. 이에 따라 기존 약 2일이 걸리던 처리 시간이 5분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해외 직구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도 도입된다. ‘해외 직구 식품 올바른 웹앱’은 소비자가 제품 사진만 업로드하면 AI가 해당 제품의 반입 차단 여부와 위해 성분 포함 여부를 자동 분석해 알려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제품명과 성분명을 직접 검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미지 기반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시스템은 식약처의 수입식품 통합 전자심사 플랫폼인 ‘수입안전 전자심사24’에 탑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위해식품 차단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 한운섭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은 국민의 안전한 수입식품 소비를 지원하는 혁신 기술”이라며, “올해 안에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공항 통과해도 내륙서 잡는다” 관세청, N차 마약 검사체계 강조

관세청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도입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이 운영 60일 만에 1kg 이상의 마약류를 적발하며 실효성을 입증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5월 28일 안양우편집중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전국 5개 우편집중국에서 본격 운영 중인 ‘국제우편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이 운영 60일 만에 합성마약·대마·코데인 등 총 3건, 1,159.3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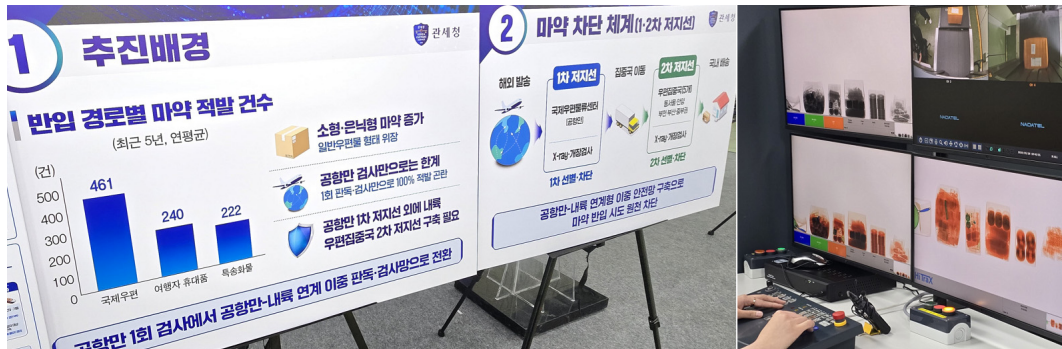
‘2차 저지선’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을 내륙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검사하는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말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올해 4월부터 동서울·부천·안양·부산 우편집중국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5개 거점에서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국제우편 물류망을 재설계하고, 모든 국제우편물이 5개 거점 집중국을 경유하도록 했다. 각 우편집중국에는 별도 검사장을 구축하고 엑스레이(X-ray) 판독 및 개장검사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동서울·부천·중부권 집중국에는 2개 검색라인이 운영 중이며, 현재 교육 중인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는 7월부터는 안양과 부산까지 포함해 모든 집중국에서 2개 검색라인 체계가 가동된다.

이번 단속 성과는 단순히 우편집중국 단계 적발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관세청은 2차 저지선에서 적발한 마약류와 관련해 발송인 정보와 유사 반입 유형 등을 분석해 공항만 ‘1차 저지선’의 검사를 즉시 강화했고, 그 결과 약 1.5kg의 마약류를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브리핑에서 “1차 저지선에서는 지식재산권이나 과세 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2차 저지선은 마약 단속에 집중된 검사체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검사 프로세스는 유사하지만 마약만 집중적으로 판독하기 때문에 훨씬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앞으로 국제우편뿐만 아니라 특송화물·여행자·일반수입·공항만·무역선 등 전체 반입 경로에 대해 복수 판독과 N차 검사체제로 구성된 ‘2차 저지선’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좌) 마약적발성과 (우) 2차 저지선에서 엑스레이 검사(출처: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세청은 향후 AI 기반 위험분석과 첨단 과학장비를 활용해 검사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람과 마약탐지견의 후각 원리를 응용해 공기 중 마약 입자를 탐지하는 ‘AI 융합 후각센서’, 일명 ‘전자코’ 기술 개발과 현장 도입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관세청은 산·학·연·관 합동으로 ‘AI 융합 후각센서 기반 마약 탐지기술 활용 협의회’도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전자코 기술의 조기 현장 실증과 세관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자코가 마약 탐지에 도입될 경우 대상물을 직접 개봉하거나 접촉하지 않고도 마약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교묘하게 은닉된 마약 적발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김성은 기자 |

중소·벤처기업 해외 진출 지원 확대... GBC 입주기업 상시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 모집에 나선다. 현지 사무공간 제공부터 법률·회계 상담, 시장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해외 안착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5월 27일 GBC 입주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GBC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정착과 사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 거점 시설이다. 현재 GBC는 미국, 중국, 베트남, 독일, 일본, 태국 등 전 세계 14개국 22개 도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현지 임차료의 경우 1년차에는 80%, 2년차에는 50%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법률·회계·노무 등 현지 전문 상담과 국가별 시장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분야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뷰티 분야는 현지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지원하고, 테크 분야는 현지 전문기관과 연계한 투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해외멘토단 연계 프로그램도 새롭게 추진한다. 해외 진출 경험과 현지 규제·정책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멘토단을 구성해 기업의 수출 다변화와 해외 진출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GBC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se.or.kr) 내 ‘지원 사업-글로벌비즈니스센터-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유오피스 이용은 GBC 온라인예약시스템(gbc.kosmes.or.kr)에서 가능하다. | 서준식 기자 |

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 도입... 수출기업 환급 절차 간소화

관세청이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환급 관련 증명서류를 기업이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의 행정부담이 줄고 환급 처리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의 환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환급 제증명서류 자율발급 제도’ 도입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 원재료 수입자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물품을 공급하는 자, 관세사는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 환급 관련 증명서류를 세관 심사 없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자율발급업체 또는 관세사로 지정받으려면 지정신청서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 환급성실도 상위업체, 담보제공생략대상자 등 지정요건 확인 서류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실제로 낸 세금을 계산해 정산받는 개별환급 방식이 기업에 더 유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수출금액에 비례해 세금을 간편하게 돌려주는 간이정액환급 적용 여부를 변경할 경우 2년의 제한기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적용에서 적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한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적용에서 비적용으로 변경하는 제한기간은 삭제했다.

또한 소요량 계산에 필요한 부산물공제 비율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환급신청 건별로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이 어려운 기업은 일정 기간이나 회계연도 동안 동일한 공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환급금 계산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소요량 사전심사 결정물품은 관세조사를 간소화해 성실기업의 중복 조사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 서준식 기자 |

반덤핑 상계관세 포커스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주요 대상국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최근 판정 사례와 조사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향후 관세 리스크 대응에 중요하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통상 전문, 이정운 변호사가 미국의 최신 반덤핑·상계관세 이슈와 함께 한국 기업이 유의해야 할 리스크 관리 전략을 짚어본다.

미 무역구제 조치의 최근 동향과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관리 새로운 관세환경 속 다시 부상한 반덤핑·상계관세 리스크



이정운(Pierce Lee) | 미국 변호사, Crowell & Moring LLP

최근 미국 통상정책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은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품목관세, 국제비상 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 그리고 무역법 122조(Section 122) 임시 글로벌관세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관세조치에 집중돼 있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과거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만 활용됐던 법적 권한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지속 가능성, 적용 범위, 실질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컸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지”, “얼마나 오래 유지될 것인지”,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 자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새로운 통상환경은 상당 부분 정리됐다. IEEPA 관세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고, 현재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무역법 122조 글로벌관세 역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으며, 임시로 시행돼 곧 종료된다. 따라서 미국의 통상환경은 산업별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법 301조(Section 301) 관세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관세들은 특정 산업 또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은 미국의 AD/CVD '3대 대상국'



그동안 전통적인 미국의 대표적 무역구제수단인 반덤핑·상계관세(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이하 AD/CVD)는 최근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기업 리스크 측면에서는 AD/CVD가 여전히 미국의 가장 중요한 통상 리스크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같은 조치는 특정 국가 또는 산업 전반에 비교적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반면 AD/CVD는 동일 국가의 동일 제품이라도 기업별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발생한다. 어떤 기업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다른 기업은 사실상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세율을 부담하기도 한다. 즉, AD/CVD는 기업의 가격경쟁력과 비교우위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관세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AD/CVD는 현재 미국 통상제도상 기업이 실질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관세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관세는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 세율 자체를 변경하기 어렵다. 반면 AD/CVD는 적극적인 조사 대응과 행정재심 참여를 통해 세율을 낮출 수 있다. 반대로 자료 제출 실패나 대응 부족 시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가 적용돼 매우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실무상 미국 고객사들은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해당 수출기업의 AD/CVD 대응 역량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 동일 제품이라도 어느 기업이 더 안정적인 세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조사 대응 경험이 충분한지, 향후 추가 관세 리스크가 낮은지를 평가한다. 즉, 동일 산업 내에서도 기업의 법적·실무적 대응 역량 자체가 경쟁력 요소가 되는 구조다.

많은 기업이 간과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국 AD/CVD 조치의 핵심 대상국 중 하나다. 현재 미국의 AD/CVD 명령 건수를 보면 중국(272건), 인도(87건)에 이어 한국(47건)은 세 번째로 많은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철강, 화학, 산업소재, 금속, 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장기간 AD/CVD 대상이 돼 왔다. 일부 산업에서는 오랜 기간 행정재심이 반복되고 있으며 신규 조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현재 한국산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 글리콜(PTMEG, Polytetramethylene Ether Glycol)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함께, 모노머·올리고머(Monomers and Oligomers, 단량체와 중합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화학, 금속, 산업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조사 압력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과 대중국 견제 기조를 고려하면 향후 조사 범위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제3국 생산구조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 기업에 중요한 리스크 요소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들은 단순히 “현재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미국 AD/CVD 제도의 구조와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 수출기업의 관점에서 미국의 AD/CVD 제도의 주요 특징과 실무상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우리 제품이 AD/CVD 대상인지 확인하기

한국 수출기업들이 AD/CVD와 관련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자사 제품이 실제로 미국의 AD/CVD 대상인지 여부다. 실무상 벌어지는 가장 흔한 오류 중 하나는 HS Code만 확인하고 “우리 제품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AD/CVD는 단순한 품목분류 문제가 아니라 적용범위 문제다.

미국의 AD/CVD 명령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되며, 각 명령에는 적용 대상 제품의 범위를 설명하는 적용범위 문구가 포함돼 있다. 실제 AD/CVD 적용 여부는 이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반면 미국 품목분류번호(HTSUS, Harmonized Tariff Schedule United States)는 참고용으로 기재돼 있다. 즉 특정 HTSUS 번호가 기재돼 있다고 해서 반드시 AD/CVD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해당 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적용범위 문구상 포함되면 AD/CVD가 적용된다.

또한 적용범위 판단에는 제품의 물리적 특성, 제조방식, 용도, 판매 형태 등도 함께 검토된다. 따라서 단순히 HS Code만 확인하거나 과거 통관 경험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하게 된다.

- | | |
|--------------------|--------------------------|
| ① 제품의 HTSUS 번호 확인 | ② 관련 AD/CVD 사건 존재 여부 확인 |
| ③ 연방관보상 적용범위 문구 검토 | ④ 유사 제품에 대한 미국 상무부 판단 확인 |

또한 중요한 점은 AD/CVD 적용범위가 고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AD/CVD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됐던 제품이 이후 적용범위 판정이나 우회수출 판정을 통해 새롭게 포함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 미국은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제3국 생산 구조에 대한 검토를 크게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산 완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전선·케이블(AWC, Alumium Wire and Cable)에 대한 AD/CVD 사건에서 한국 기업인 (주)부산케이블엔지니어링이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한국에서 가공·생산한 제품에 대해 우회수출 판정을 내렸고, 그 결과 해당 제품을 기존 중국산 AD/CVD 조치의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 사례는 미국 상무부가 최초 적용범위 문구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사를 통해 한국산 제품까지 기존 중국산 AD/CVD 조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들은 단순히 통관 단계에서 HS Code만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자사 제품이 실제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보다 실질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시장 비중이 큰 기업이라면 원재료의 원산지, 공급망 구조, 생산공정 등을 자세히 검토해 미국 상무부의 우회수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AD/CVD 적용 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출 제품이 AD/CVD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실무상 많은 기업이 ‘현재 적용되는 세율’이 곧 최종 관세율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AD/CVD 제도는 일반 관세와 구조 자체가 다르다.

미국 AD/CVD는 기본적으로 기업별 세율 구조를 사용한다. 즉 동일 국가의 동일 제품이라도 생산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수출자 조합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어떤 기업은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다른 기업은 시장 접근이 어려운 수준의 고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 AD/CVD에는 두 가지 개념의 세율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바로 현금예치율과 최종 부과세율이다. 현금예치율은 미국 수입시점에 우선 납부하는 잠정세율이다. 미국 수입자는 제품 수입 시 해당 세율에 따라 AD/CVD를 예치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잠정 예치금 성격이며, 최종관세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 부과세율은 현금예치율이 정해진 이후 행정재심을 통해 다시 계산된다. 따라서 실제 최종 부담 관세는 수입 이후 수년 뒤에 결정된다. 예를 들어 현재 5% 현금예치율이 적용되고 있더라도, 이후 행정재심 결과 최종 부과세율이 20%로 산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수입자는 추가로 15%를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최종 부과세율이 2%로 낮아지면 차액은 환급된다.

즉 현재 적용되는 현금예치율만 보고 “우리 제품 세율은 낮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실무상 미국 고객사들은 현재 현금예치율보다 향후 행정재심에서 세율이 어떻게 변동될 가능성

이 높은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 적용 세율은 대체로 다음 자료에서 확인하게 된다.

- 연방관보 공고
- 미국 상무부가 CBP에 전달하는 현금예치 지침(cash deposit instructions)
- 미국 상무부가 CBP에 전달하는 정산 지침(liquidation instructions)

한국 수출기업들은 단순히 현재 현금예치율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향후 행정재심에서 어떤 최종 세율이 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AD/CVD에서는 '현재 세율'보다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세율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기업별 생존 갈린다... 조사 및 행정재심 대응의 중요성

미국 AD/CVD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기업의 조사 대응 수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 상무부는 조사 및 행정재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별 세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동일 국가의 동일 제품이라도 기업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진행 중인 한국산 Monomers and Oligomers 사건의 예비판정에서도 기업별로 상당한 세율 차이가 나타났다. 미원스페셜티케미칼은 25.07%의 세율이 산정된 반면, 그린케미칼에는 65.72%의 세율이 적용됐다. 반면 국도화학은 AFA가 적용돼 188.01%의 매우 높은 세율이 산정됐다.

이처럼 미국 AD/CVD 사건에서는 조사 대응 수준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이 불완전하거나 상무부 요청에 충분히 협조하지 못하는 경우 매우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실상 미국 시장 접근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히 반덤핑 사건에서는 가격 구조와 가격 관리가 핵심 쟁점이 된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판매가격과 비교시장 가격 또는 구성가격 등을 비교해 덤핑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격정책과 거래구조가 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거래조건, 리베이트 구조, 운송비 처리, 계열사 거래, 판매 경로 등 다양한 요소가 덤핑률 계산에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반덤핑 리스크 관리는 단순히 조사 개시 이후 대응하는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 가격 구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와도 직접 연결된다.** 특히 **미국 판매가격과 제3국 또는 내수시장 가격 간 차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우 향후 높은 덤핑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기업들은 조사 대응뿐 아니라 평상시 가격정책과 거래구조 자체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병행하기도 한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판매자료, 생산비용, 원재료 구매자료, 거래 구조 등 매우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며, 제출자료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엄격하게 검토한다. 따라서 AD/CVD 대응은 단순한

법무 이슈가 아니라 기업의 내부 자료관리 체계와 직접 연결된다.

결국 미국의 AD/CVD 사건에서는 조사 대응 자체가 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과 직결된다. 단순히 현재 세율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향후 조사와 행정재심에서도 안정적으로 낮은 세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시장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평상시 가격정책, 거래 구조, 자료관리 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수출 경쟁력 좌우하는 AD/CVD 대응

미국의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AD/CVD는 여전히 한국 수출기업에 가장 중요한 통상 리스크 중 하나다. 특히 AD/CVD는 특정 국가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관세가 아니라 기업별 대응 수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제도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최근 미국은 중국산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하는 제3국 생산 구조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회수출 조사를 통해 기존 AD/CVD 조치가 제3국 가공 제품에도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들은 단순히 현재 조사 대상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자사 제품의 적용범위, 원재료 조달 구조, 생산공정, 가격 구조, 자료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AD/CVD 제도에서는 현재 세율 자체보다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세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조사 및 행정재심 대응 역량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미국 시장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시선, 인도 통관

인도는 2014년 이후 GDP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경제의 신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4월 한국과 인도는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가속화하고 양국 교역액을 2030년까지 50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도 내 최대 회계법인 Ernst&Young India의 윤승현 관세사가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주요 관세 이슈를 짚어봤다.

자칫하면 통관보류·물류비 상승 인도의 비관세장벽 수입요건과 BIS 인증



윤 승 현 | 언스트앤영(Ernst&Young) India 관세사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자유를 전제로 하지만, 각국은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국민 안전, 국가안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정 물품의 수출입에 대해 허가, 승인, 인증, 표시, 검사 등 개별 법령상 요건을 부과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관이 지연·보류되거나 수출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일부 수입인증은 취득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인도로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수입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허가·승인·인증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세관장 확인제도,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등을 통해 수출입요건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공고는 개별 법령상 수출입요건을 통합해 고시한 것으로, 기업들은 HS Code를 기준으로 허가·승인·인증·검사 등 관련 요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인도는 대외무역총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에서 대외무역정책(FTP, Foreign Trade Policy)을 통해 HS Code별 수출입정책을 자유(Free), 금지(Prohibited), 제한(Restricted), 국영무역기업(STE, State Trading Enterprise)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금지품목은 특별한 허가 없이도 수출입이 불가능하고, 제한품목은 대외무역총국으로부터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수출입이 가능하다. 국영무역기업 품목은 지정된 기관만 수입할 수 있다.



출처: AI 생성 이미지

문제는 인도에서는 대외무역정책에 따른 기본적인 수출입정책 외에도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승인·인증·검사 요건이 존재함에도, 이러한 요건이 한국의 통합공고처럼 HS Code별로 일원화돼 정리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결과 기업은 품목별로 여러 부처의 개별 규정과 기술 기준을 각각 검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입요건 판단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단순한 행정 부담에 그치지 않고 실제 납기와 공급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지 인증 취득과 통관 단계에서의 지연으로 인해 기업들은 수주 및 공급계획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는 것이 BIS 인증과 관련된 비관세 장벽이다.

HS Code가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세부 사양에 따라 적용되는 인도표준(Indian Standard)이 달라져 인증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출하와 통관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다. 또한, 국제공인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도 현지 시험을 다시 요구받거나, 라벨링·마킹·포장 표시의 흠결로 재검사가 진행돼 시간과 비용이 누적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호에서는 인도 수입요건 중 한국 기업이 실무상 가장 자주 마주하는 BIS 인증제도와 그에 따른 통관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도 BIS 인증 개요와 유의사항

BIS 인증은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에서 운영하는 품질관리 인증제도로 기본적으로 자발적 인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인도정부는 공익, 국민 안전,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을 사유로 특정 품목은 강제인증 대상으로 지정하며, 이는 해당 품목을 관할하는 각 부처에서 발행하는 품질관리 명령(QCO, Quality Control Orders)을 통해 시행된다. 강제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반드시 BIS 인증을 취득하고 제품에 인증마크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은 인도 내 수입, 유통, 판매, 보관, 전시가 금지된다(BIS법 제17조). 따라서 강제인증 대상 제품은 BIS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실상 인도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다.

BIS 인증은 제조자 인증 방식으로 운영되며, 제조자가 인증을 취득한 후 수출물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BIS는 현재 제품 인증과 관련해 Scheme I, Scheme II, Scheme IV, Scheme X 등 여러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한국 기업의 인도 수출 실무에서 대부분 품목은 Scheme I과 Scheme II에 해당한다.

Scheme I은 흔히 'ISI Standard Mark' 제도로 불리며, BIS가 제조설비, 공정관리, 품질관리, 시험능력 등을 제조공장 실사를 통해 평가하고, 제품의 표준 적합성을 시험으로 확인한 후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구조다. Scheme II는 'CRS(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의무등록제도)'로 불리며, 전자·IT 제품 등에 적용된다. Scheme II는 제조공장 실사 없이 서류심사와 BIS 인정 시험소에서 샘플 테스트를 통해 부여된다.

인도 표준국은 해외 제조업체를 위한 해외 제조자 인증제도(FMCS, 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BIS 본부 산하의 해외 제조자 인증 전담부서(FMCD, Foreign Manufacturer Certification Department)에서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Scheme I (ISI Standard Mark)	대상 물품: 시멘트, 가전제품, 배터리, 식품, 자동차부품 등 소요 기간: 약 6~12개월 인증 절차: 해외 제조공장 현장실사 필수
Scheme II (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대상 물품: 전기·전자 제품, 태양광 모듈, 화학제품 등 소요 기간: 약 3~6개월 인증 절차: 샘플 테스트만으로 인증 취득 가능(현장실사 없음)

인도 세관은 수입통관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BIS 강제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그러나 인도표준(Indian Standard)은 HS Code와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으며, 동일한 HS Code 품목이더라도 제품의 구조·성능·용도·기술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세관 공무원이 기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품명이나 HS Code 등 확인 가능한 정보에 근거해 해당 물품을 강제인증 대상이라고 추정해 통관을 보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해당 품목이 BIS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다. 수입자는 관련 인도표준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에 기술 검토를 요청해, 해당 물품이 BIS 강제인증 대상 규격이 아니라는 인증서(NOC, No Objection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통관 가능하다. NOC는 부처별로 절차와 소요기간이 상이하며, 발급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품목별 수입요건 검토의 중요성

인도로 물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관세율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상 수입요건을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인도는 수입정책 자체보다도 개별 부처의 기술규제, 품질규제, 표시규제가 실제 통관과 시장진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BIS 인증은 인도 수입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비관세 요건 중 하나이므로, 제품의 기술적 특성과 BIS 강제인증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BIS 인증을 포함한 수입요건은 인증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즉 해외 제조자, 해외 수출자, 인도 수입자 중 누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거래 초기부터 분명히 정해두고, 계약서에 관련 책임·비용부담·자료제공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BIS 인증의 경우 제조자가 인증을 받고 수출물품에 인증마크를 표기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인증 취득 책임, 시험자료 제공 의무, 비용부담 등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복 수입이 예정된 품목의 경우에는 샘플 수입을 통해 적용되는 수입규제와 라벨링, 인증요건 등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 실무상으로는 사전 기술검토를 충분히 거친 뒤 첫 수입을 진행해야 불필요한 통관보류와 물류비용 상승을 줄일 수 있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원산지 / 원산지 표시

작업용 장갑을 수입할 때 장갑 낱개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HS Code 제6116호에 분류되는 장갑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3]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작업용 면장갑은 10족까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고
6116	장갑	- 현품에 원산지표시 - 작업용 면장갑은 10족까지 소매용 최소 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FTA / 경유 제품의 RCEP 적용 여부

중국산 의류를 일본 수출업자를 통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려 합니다. 이 경우 한·중 FTA 혹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합니다.

한·중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이 직접운송돼야 하나, 일본을 경유하므로 한·중 FTA 적용은 불가하며, RCEP 적용을 위해서는 제품 경유지인 일본에서 발급받은 연결 원산지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때, 일본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초 수출국(중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일본에서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 당사국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 당사국에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증명을 사용해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국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아야 합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9조(연결 원산지 증명)

1. 제3.16조(원산지 증명)를 조건으로, 중간 경유 당사자의 발급 기관, 인증수출자 또는 수출자는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 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 원본 또는 그 진정 등본이 제시되어야 한다.
 - 나. 연결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이 원산지 증명 원본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다. 연결 원산지 증명이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에 따른 원산지 증명 원본의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라.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 당사자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 당사자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 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자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 마. 분할 수출 선적의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 바. 연결 원산지 증명상 정보는 원산지 증명 원본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보세화물 / 장치물품의 폐기

「관세법」 제160조 제2항에 언급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관세법」 제160조 제2항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멸실”은 ‘보관인 또는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측과 예방이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질의회신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원산지 / 원산지관리전담자 변경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업체의 원산지관리전담자(서명자)가 퇴사할 경우 전담자 변경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FTA관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다목 및 제7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해야 하므로, 인증 당시 지정됐던 원산지관리전담자가 퇴사했다면, 새롭게 원

산지관리전담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해 인증세관에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교육이수증 또는 자격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중략> ...

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할 것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중략> ...

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할 것

원산지관리전담자는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원산지관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자격증당 점수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자격증 소지만으로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될 수 있음).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3]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 FTA 교육 이수실적 20점 이상,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 FTA 교육 이수실적 10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② 영 제7조 제1호 다목 및 같은 조 제2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업체의 소속직원에 한정한다.

1.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2. 「자격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인받은 원산지 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

냉동 멘보샤의 품목분류에 관한 판례 해설

김희정 |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I. 들어가며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를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서는 품목분류를 원칙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관세율표 및 해설서에서 호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물품의 가공 정도나 구성 형태에 따라 특정 용어의 포섭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용어를 해석함에 문언 해석뿐만 아니라 물품의 제조 공정 및 개정 연혁 등에 관한 종합적 고찰이 요구된다.

이번 호에서 살펴볼 사건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호의 용어에 관한 정확한 해석이 문제된 사안으로서 그 의의를 가진다.

II.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9.00.00.부터 2023.00.00.까지 베트남에 있는 B, C 및 D로부터 'FROZEN MENBOSHA'(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고 한다) 제1605.21-9000호로 신고했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1605.21-9000호임을 전제로 「자유 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물품에 대해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협정관세율 16% 적용을 신청했고, 피고들은 이를 수리했다.

3. 원고는 2023.00.00. 또는 2023.00.00. 피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1605.21-1000호(협정관세율 0%)로 변경하면서 그 세율 차이에 따라 과다하게 납부된

관세,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들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각 기각했다(이하 피고들의 각 처분을 통칭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Ⅲ.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물품을 구성하는 수리미, 타피오카, 양파, 설탕 등을 혼합해 만든 반죽은 ‘접착반죽’으로 HSK 제1605.21-1000호에서 말하는 ‘반죽’에 해당하고, 이 사건 물품은 통새우살에 위 반죽을 입힌 것이다.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 식빵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21.12.9.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HSK’라고 한다)는 제1605.21-1000호에 관해 ‘빵가루를 입힌 것(Breaded)’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2021.12.9.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1호로 개정되면서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것(Covered with bread crumbs or batter)’으로 변경됐으나, 그 무렵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례에 비춰 반죽 이상의 공정을 거쳤는지에 따라 제1605.21-1000호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므로, 이 사건 물품은 수입신고 시점을 떠나 모두 HSK 제1605.21-1000호로 분류돼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세관 절차로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HS협약은 본문과 부속서로 구성돼 있는데, HS협약 본문은 전문과 20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고, 부속서는 ① 품목분류표[4단위로 분류되는 호(Heading)와 추가 2단위로 분류되는 소호(Sub-Heading)로 구성], ② 부·류·소호의 주(Notes), ③ HS협약 해석에 관한 통칙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은 HS협약의 체약국으로서 HS협약을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이하 ‘관세율표’라고 한다)로 수용해 적용하고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율표상 품목분류(6

단위)를 10단위까지 세분해 HSK를 고시 및 운영하고 있다[앞서 언급한 관세율표와 HSK는 대상 품목, 분류를 위한 부(部)·류(類)·절(節)·호(號)의 구분, 주(註) 해석에 관한 통칙 등이 동일하다]. 관세율표 통칙 제1호는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품목분류는 우선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이에 관련되는 부·류의 주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대법원 1998.5.8. 선고 98두1949 판결 등 참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부과해야 하고, 관세율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일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게 돼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 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하는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등 참조).

2) HS협약에 따른 HS협약 관련 지침 자료에는 HS해설서와 HS품목분류의견서가 있다. HS해설서는 세계관세기구의 HS 품목분류표와 관련된 공식적인 해설서 및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침으로서 부, 류, 호 및 소호의 범위와 주 및 용어 등에 대한 해설을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는 HS해설서와 마찬가지로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 및 세계관세기구의 개별 품목에 대한 공식적인 품목분류의견서로서 품목분류 코드와 분류 이유 등이 적시된 자료다. 우리나라는 HS해설서 및 HS품목분류의견서를 관세청고시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용하고 있고, 위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592 판결 등 참조).

3) 구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24.4.1. 관세청고시 제20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HS해설서는 제4부 제16류의 총설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호, 2023.1.20.)」

[별표1] HS해설서 제4부 제16류 총설

이 류에는 육이나 설육(설육)[예: 족(feet)·껍질·염통·허·간·장·위]·피(blood)·곤충·어류(껍질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 제조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 이 류에는 제2류·제3류·제4류 주 제6호·제0504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보존처리한 것을 분류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중략> ...

(3) 추출물(extract), 즙이나 마리네이드(marinades)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어란(魚卵: fish eggs)으로 조제한 캐비어나 캐비어 대용물, 단순히 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것, 송로(松露: truffled)를 첨가하거나 조미(예: 후추와 염으로 조미)한 것 등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물품의 제조 공정

이 사건 물품은 껍질과 꼬리를 제거한 통새우살과 연육, 타피오카, 양파, 설탕 등을 혼합해 만든 반죽(이하 ‘이 사건 어육반죽’이라고 한다)을 정사각형으로 절단된 2장의 식빵 사이에 채워 넣고 이를 튀긴 뒤 냉동해 포장한 제품으로, 별지3과 같이 총 5가지 종류로 돼 있다.

2) 이 사건 물품의 구성

이 사건 물품에서 통새우살의 비중은 전체의 약 40~45%이고, 연육의 비중은 전체의 약 15~20%다. 이 사건 물품의 내부 단면은 다음 그림과 같다.



3)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인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 사건 물품과 같이 새우를 주재료로 한 제품에 대해 제1605.21-1000호 또는 제1605.21-9000호로 품목분류를 했다.

4) HSK 개정

구 HSK는 제1605.21-1000호에 관해 ‘빵가루를 입힌 것(Breaded)’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2021.12.9.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1호로 개정되면서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것(Covered with bread crumbs or batter)’으로 종전 규정내용을 변경했다. 개정 전후의 HSK 제1605.21-1000호 및 제1605.21-9000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전				개정 후			
품목번호		품명		품목번호		품명	
1605	2		새우류	1605	2		새우류
1605	21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1605	21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1605	21	1000	빵가루를 입힌 것	1605	21	1000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것
1605	21	9000	기타	1605	21	9000	기타

5)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반죽에 관한 규정 등

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은 ‘Frozen raw breaded shrimp’와 관련해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는 반죽과 브레딩의 재료는 적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반죽의 재료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

나) 식품재료에 관한 전문서적인 ‘Ingredients in Meat Products’는 “반죽에 포함될 수 있는 재료의 종류가 매우 다양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 학술지, 논문, 블로그 등에는 난백으로 만든 반죽, 무화과·배의 혼합추출물을 넣은 반죽, 길쭉한 형태의 반죽 등이 소개돼 있다.

6) 관세청이 발간한 자료상 반죽의 의미

관세청이 발간한 ‘관세율표 용어 따라잡기’, ‘펼쳐보는 관세율표 용어 사전’에는 관세율표 제16류에서 말하는 반죽(Batter)에 대해 “밀가루에 물 등을 가하여 혼합한, 흐를 정도의 경도로 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HSK 제1605.21-1000호가 아닌 HSK 제1605.21-9000호로 분류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세청이 발간한 ‘관세율표 용어 따라잡기’, ‘펼쳐보는 관세율표 용어 사전’에 의하면, 관세율표 제16류에서 말하는 반죽(Batter)은 “밀가루에 물 등을 가하여 혼합한, 흐를 정도의 경도로 된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어육반죽은 연육, 타피오카, 양파, 설탕 등을 혼합해 만든 것으로 밀가루에 물 등을 가해 혼합한 것과는 다르고, 앞서 본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반죽에 관한 규정 등이 관세율표 제16류에서 말하는 반죽(Batter)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어육반죽은 HSK 제1605.21-1000호의 ‘반죽’이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어육반죽을 HSK 제1605.21-1000호의 ‘반죽’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물품은 통새우살에 반죽을 ‘입힌’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HSK 제1605.21-1000호는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것(Covered with bread crumbs or batter)’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HS해설서는 제16류의 총설에서 ‘단순히 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것’을 제16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HSK 제1605.21-1000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새우류’가 존재하고, 그 새우류의 표면에 빵가루나 반죽층이 형성돼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물품은 소위 ‘멘보샤’라고 불리는 식품으로, 껍질과 꼬리를 제거한 통새우살과 이 사건 어육반죽을 정사각형으로 절단된 두 장의 식빵 사이에 채워 넣고 이를 튀긴 뒤 냉동해 완성된다. 이 사건 물품의 제조 공정, 이 사건 물품에서 통새우살과 연육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물품의 내부단면 등에 비취, 이 사건 물품은 통새우살의 표면에 단순히 이 사건 어육반죽을 입힌다기보다는 이 사건 어육반죽의 비중을 상당 부분 포함시켜 통새우살과 함께 두 장의 식빵 사이에 채워 넣는 형태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물품의 제조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접착반죽’의 역할을 위해 통새우살의 표면에 이 사건 어육반죽이 일정 정도 도포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은 이 사건 어육반죽의 도포가 제품의 전체적 성질을 결정하는 외피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통새우살과 이 사건 어육반죽을 혼합한 속재료를 두 장의 식빵 사이에 채워 넣은 상태에서 통째로 튀겨 완성되는 구조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제품의 본질적 성질이 속재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피 역할을 하는 식빵 부분이 제품의 외형·식감·사용 방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식빵을 고려하지 않고 속재료만을 기준으로 ‘통새우살에 반죽을 입힌 것’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V. 결어

이 사건 판결은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물품의 객관적 특성과 가공 정도를 확정된 뒤, 관세율표상 해당 호의 용어에 관한 개정 연혁과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용어의 정의, 나아가 제조공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 의미를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품목분류를 판단한 점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판단 구조는 관세율표 해석에 있어 문언 해석을 기초로 하되, 실질적 내용에 기초한 체계적 해석을 더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안에서 품목분류 해석 기준으로서의 참고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신간 도서안내

2026 개정판 관세법령집

- ☑ 관세 행정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록 법령 개편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 등 신규 수록
- ☑ 2026년 4월 1일까지 최신 개정 법령 반영
최신 법조문과 관련 고시·판례 통합 업데이트
- ☑ 법령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구성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관세 · 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 2026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2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징액한금률표 개정사항 수록
-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 구매 문의 안내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더욱 다양한 도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TEL (02)3416-51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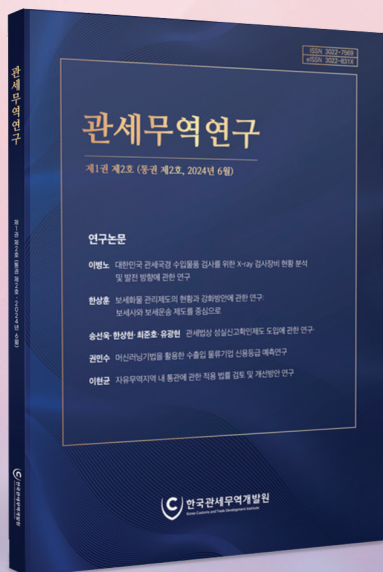


후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